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425
----------	-----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7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우리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나.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단체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시설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4. 16. ~ 4. 24. 아래표 참고

조례안(의회안)	집행부 의견(경제과)	검토결과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 생이모작 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u>2. 취업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u>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 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 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 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u>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한 의견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의 내용과 중복 입법으로 판단됨.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 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제4조 대한 사유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 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르면, 전연령 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대	(불수용) 1.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u>「노후준비 지원법」</u> 제3조 “지자체는 노 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에 따른 법규상 지 자체 의무사항을 자치 법규로 제정함 (본 조례안은 은퇴 전·후 중장년에 대한 인생준비, 노후생활 지 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와는 목적을 달리함) 2. 안 제4조제1항제2 호관련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취업지원 및 일자 리지원사업’은 「평 창군 일자리 창출 지 원에 관한 조례」 제4 조(다른 조례와의 관 계)에 따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열된 각 목의 사업들도 개별 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어, 중복 입법으로 여겨짐. 또한 2항에서 사업 대상을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이 없음. 또한 조례 제안이유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제안하였는데,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폐지 예정임.	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됨 <u>제4조에 따라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관련 일반조례라 할 수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특별규정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할 수 있음</u> 다만, 제2호 표현은 그 취지를 살려 구체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또한,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u>예외적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연령이 변경된다 할 수 있지</u> 이 규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일반적 조례인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 연령 대상과 같다 할 수 없음.
--	---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은미의원
연락처	(033) 330 -2503